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85
----------	-------

발의연월일 : 2026. 5. 4.

발 의 자 : 정연욱 · 신성범 · 김기웅
김승수 · 박성훈 · 서명옥
정동만 · 안상훈 · 김희정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수직적 역할관계 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 수리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과도 서로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를 지도·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을 “국가유산수리를 지도·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u>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u> 을 말한다.	2. ----- --- <u>국가유산수리를 지도·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u> ----- ----- -----.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u>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u> 을 말한다.	3. ----- --- <u>국가유산수리에</u> ----- ----- ----- ----- -----.
4. ~ 17. (생 략)	4. ~ 17. (현행과 같음)